

고성군 관리계획(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: 고성노벨컨트리클럽)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(의안번호 제115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3. 3 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 : 2009. 3. 4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9. 3. 10 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고성 Nobel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영향(진동·비산먼지 등)과 향후 운영시의 낙구피해 등을 방지코자 사업대상지 중앙부 농지편입을 통한 체육시설 확대와 내방 관광객의 체류휴양에 일조코자 골프텔의 추가전립 등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함.

3. 청취내용

- 사업명 : 군관리계획(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: 고성 Nobel 컨트리클럽) 변경결정
- 사업위치 :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산98번지 일원
- 사업면적 : 1,289,300㎡ → 1,501,030㎡ (증 211,730㎡)
- 사업기간 : 2008년 ~ 2010년
- 사업시행자 : (주)고성관광개발

4. 청취경위

- 2008. 12. 11 : 고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제안
- 2009. 01. 05 : 고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반영 알림
(군→사업시행자)
- 2009. 03. : 지방의회 의견 청취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노벨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과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환경, 재해, 교통영향평가 협의 결과 및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사항으로 골프장 운영시 **낙구**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추가편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,
- 인근 마을(동촌)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서 주민들이 대토를 희망하고 있는 등 각종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또한 당항포관광지와 연계된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추가 편입 토지가 7만평 증가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합니까?
- 답 : 협상중에 있습니다.
- 문 : 감정을 하고 토지매입 협상이 안 될 경우 행정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?
- 답 : 실시계획 인가 접수시 편입토지의 2/3 이상 동의가 없으면 인가를 해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.
- 문 : 당초 제척 토지는 무슨 뜻입니까? 진입도로를 변경하여 다른 쪽으로 옮긴 후 당초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요.
- 답 : 토지 모양이 안맞거나 쓸모가 없어 제외시키는 토지를 말합니다.
- 문 : 그 지역은 주민들과 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. 주민들의 이주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은?
- 답 : 편입되는 가구는 이주 대책을 하지만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은 없습니다.
- 문 : 얼마 전 동촌마을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민원을 하소연하고 갔으나 그 뒤 사업자와 추진위원회, 동촌마을 주민간에 이행합의서 내용을 몇 가지 낭독해 보겠습니다. 「1항 “을(추진위원회)” 과 “병(동촌마을)” 은 고성노벨컨트리클럽 골프장 공사로 인하여 “병(사업자)” 의 직접적인 피해와 생활불편으로부터 발생한 민원 일체에 대하여 합의하고 “갑” 의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최선의 협조를 한다.」 이행합의서 내용을 과장도 확인하고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.
- 답 : 그렇게 하겠습니다.

7. 심사결과 :

- 2009. 3. 10 재석위원(3명)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